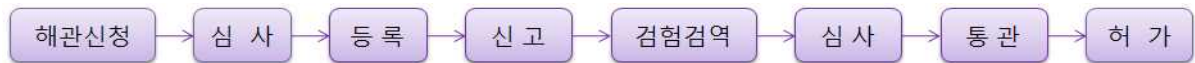


한국산 포도 중국 수출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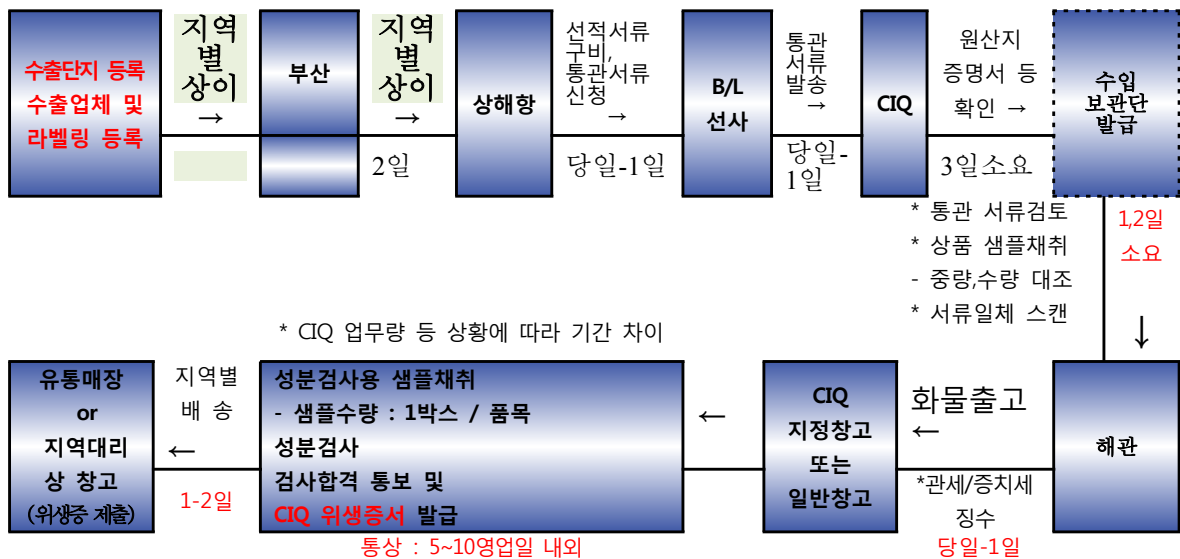
자료작성 : aT베이징지사

1. 통관절차

- 신선포도 수입은 식용과일수입 절차에 속하며 다음과 같음
- 반면 유통매장 입점을 위한 위생증서 발급에는 약 3주가 소요됨



<포도 중국 수출 프로세스(상해항 기준)>



- 식용과일 수입절차 역시 수입식품 절차와 다르지 않음
- 전자인증 - 전자데이터발송 - 당지신청 - CIQ총국심사비준처리 - 화물 수입 - 보검 - 현장검험 - 통관

2. 검역제도

【 한국 포도 중국 수출시 식물검역 요구 】

1. 법률법규

- 1) 진출경동식물검역법(进出境动植物检疫法),
진출경동식물검역법실시조례(进出境动植物检疫法实施条例)
- 2) 식품안전법(食品安全法), 식품안전법실시조례(食品安全法实施条例)
- 3) 한국생식포도중국수출검험검역요구(韩国鲜食葡萄输华检验检疫要求)

2. 수입허가상품명 : 포도 (Vitis vinifera Linn.)

3. 수입허가포도 산지 : 한국 포도산지

4. 수출할 포도는 반드시 한국QIA(농림축산검역본부, 이하 QIA)에서 중국 AQSIQ(중국 국가질량감독 검험검역 총국, 이하 AQSIQ)에 생산재배 과수원과 가공공장의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이름, 주소, 고유번호) AQSIQ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해야 함.

5. 병충해 유해물질 등 중점 관리 대상

- 1) 温室条蓟马 *Hercinothrips femoralis*.
- 2) 日本臀纹粉蚧 *Planococcus kraunhiae*.
- 3) 葡萄根瘤蚜 *Viteus vitifolii*.
- 4) 大丽轮枝孢 *Verticillium dahliae*.

6. 수출 전 관리 규정

1) 과수원 관리

- (1) 매년 포도 재배기에, 중국에서 규정한 중점 관리 병충해에 대한 검역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 시 농약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사용한 농약은 반드시 중국 AQSIQ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기록해야 한다.
- (2) QIA는 부정기적으로 병충해 방역(농약사용 기간, 종류, 사용량) 및 산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포장공장 관리

- (1) QIA는 수확기에 중국으로 수출 준비중인 포도에 대한 생산 과수원

및 가공 공장에 대한 검역 시찰을 해야 하며, 중국에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과실이 포장 공장으로 이송되는 지 확인해야 한다. 과실은 반드시 직접 수확한 것이어야 하며, 낙과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가공공장으로 이송 시 등급 분류 전 반드시 종이를 제거해야 한다.

- (2) 가공공장으로 이송된 과실은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하며, 모든 병충해를 제거해야 하며, 기형과실 및 병충해, 나방, 부패된 과실, 가지, 잎사귀, 뿌리, 토양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포도송이 안에 검역 대상인 병충해가 혼입되었는지 주의해야 한다. 만일 해당 병충해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과수원에서 생산된 과실의 중국 수출을 즉시 취소하거나, 병충해 제거를 먼저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병충해 제거 관련내용은 AQSIQ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포장상자 아래 반드시 SO₂ 이산화황 보존 처리된 포장재질을 깔고 수출포도에 병충해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4) 포장 과정 중 수시로 샘플링하여 검역을 진행한다.
- (5) 중국수출 포도는 단독으로 보관해야 하며, 전용창고와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병충해 및 감염을 예방한다.

3) 포장관리

- (1) 포도의 포장재료는 중국의 검역 규정에 부합하는 위생적인 원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재활용금지). 포장상자의 공기 구멍은 반드시 방충망으로 덮어 해충의 유입을 방지해야 한다.
- (2) 매 포장 상자에 AQSIQ와 한국 검역주관부문에서 허가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3) 매 포장 상자 위에는 반드시 영문으로 된 과일의 종류, 산지(도, 시, 군 등), 국가, 과수원구역명 및 등록번호, 포장공장 및 포장공장의 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팔레트로 운송되는 모든 화물은 중문으로 “输往中华人民共和国”로 표식하여야 한다. 만약 팔레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 포장상자 위에 중문으로 “输往中华人民共和国”를 표식하여야 한다.

4) 수출 전 검역

- (1) 한국수출과일검역규정에 의거 현장검역 및 실험실 검역을 실시한다.
- (2) QIA혹은 QIA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포도에 대하여 샘플링 검역을 실시; 매 1건의 수출 건 당 2%의 샘플을 채취하여 검역하며, 2%는 600송이를 최저 기준으로 한다. 항공 운송되는 포도의 경우 10%를 기준으로 한다.
- (3) 만약 중국에서 중점 관리하는 병충해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수출 화물의 중국 수출을 취소해야 하고, 동시에 과수원과 포장 공장 등의 상황을 주시하며, QIA혹은 QIA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원인을 조사하고 관련 조치를 취한다. 동시에 해당 조치 내용과 기록을 중국 AQSIQ혹은 수입 항구 CIQ에 보고해야 한다.

5) 증명한건에 대한 요구 : 검역합격 후 QIA혹은 QIA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식물검역증서(컨테이너넘버기재 및 한국신선포도수출검역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함, 중국에서 중점 관리하는 유해 병충해 불검출 이라고 기재된)를 발급해야 한다.

7. 수입규정

1) 유관증명자료

(1) 한국 수출포도가 AQSIQ에서 규정한 동식물검역허가증에 부합하는지 확인

2) 수입검역규정 : 검역규정에 의거 유관 규정에 부합할 경우 수입을 허가

8. 부적합판정

- 1) 검역 중 포장이 제 6조 3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입을 허가하지 않음
- 2) 과실이 등록된 과수원과 포장공장에서 생산된 것이 아닐 경우 수입을 허가하지 않음
- 3) 검역 중 병충해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쉼백, 폐기, 병충해 제거 등의 처리를 함과 동시에 AQSIQ는 즉시 QIA에 관련 과수원에서 생산된 포도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모든 항목을 예의 주시한다. QIA는 관련 내용을 조사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AQSIQ는 QIA에서 조사한 내용 및 평가를 근거로 수입최소 결정을 취소할지 보류할지 결정한다.

9. 예비 검역

QIA협조 아래 AQSIQ는 2명의 검역원을 한국으로 파견하여, 중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의 포도 생산 과수원에 유해병충해 방역, 포장 및 냉장 보관 등에 관한 시찰을 실시한다. 본 예비 검역 실시 해당 년에 AQSIQ는 당해 년도의 모든 중국 수출 포도에 대하여 QIA혹은 QIA의 위임을 받은 자와 연합 검역을 실시한다. 만약 중국에서 중점 검역대상으로 지정한 병충해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화물의 중국 수출을 불허하며, AQSIQ는 향후 수출기에 계속 검역원을 한국에 파견하여 예비 검역을 해야 할지 결정한다.

10. 주기적 심사

한국포도 검역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QIA와 협상하여 병충해 및 상관 조치를 지속적으로 조정한다.

자료원 : 중국질검총국 2015.08.04. 94호 공고

3. 대중국 포도수출단지 현황

등록번호	수출단지명	농가 수
P-23-01	천안포도수출단지	13
P-38-01	서상주농협포도수출단지	11

자료원 : 중국질검총국 2015.09.22